

#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6월 일

발 의 자 : 강 성 삼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,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목적의 사용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여,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센터 운영원칙 중 이용 배제 대상의 제외사항으로 의정보고회를 추가함(안 제3조제5호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11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목적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원칙) 주민자치센터(이하 “자치센터”라 한다)와 주민자치회(이하“자치회”라 한다)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원칙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11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목적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1 공직선거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902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111조(의정활동 보고)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, 보고서(인쇄물, 녹음·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), 인터넷, 문자메시지,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·인사말(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통하여 의정활동(선거구활동·일정고지,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선거구민(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보고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·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.

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첨부·게시할 수 있으며,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·장소 및 보고사항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)을 게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·주소(이하 이 조에서 “세대주명단”이라 한다)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구·시·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·교부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,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·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(명부사본의 교부)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명부”는 “세대주명단”으로 본다.

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·수량,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0. 2. 16.]

##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·개정 현황

(2025. 6. . 현재)

연번	자치단체명	법규명	제·개정일	소관부서	비고
1	서울특별시 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2023-06-28	건설도시국 교통과	
2	서울특별시 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2024-07-02	교통국 교통정책과	
3	경기도 부천시	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	2023-12-26	기획조정실 재산관리과	